

인천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합15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규석, 이수호(소송구조)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설지혜, 김찬

변 론 종 결 2020. 12. 10.

판 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C와 피고 사이에 2016. 9. 8.경 체결된 200,000,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8.부터 이 사건 2020. 6.

2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및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5가합2269호로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6. 15. ‘C는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C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567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24. C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C가 또다시 대법원 2106다27675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4. 5. C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나. C는 2016. 9. 8.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자신의 소유인 충북 진천군 F 지상 G아파트 H호, I호, J호, K호, 제2층 L호, 제3층 M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E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같은 날 이를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달 9. 위 돈을 다시 C의 사실상 배우자인 N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C는 위와 관련하여 청주지방법원 2018고단2266호로 기소되어 2019. 6. 27.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면탈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C는 위 판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9노108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9. 12. 12.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 C가 다시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20도212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2. 2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C는 2006. 12.경 원고에게 충북 진천군 O 지상 P아파트의 골조공사 대금으로 2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C를 상대로 위 약정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6. 15. ‘C가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C는 위와 같은 판결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C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이를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2016. 9. 8. 자신의 소유인 충북 진천군 F 지상 G아파트 H호, I호, J호, K호, 제2층 L호, 제3층 M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E에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고 2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C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다음, 같은 날 다시 이를 피고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C, C의 사실혼 배우자, C의 아들이 각각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였고 C가 피고나 주식회사 Q에 2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C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하여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관련 민사소송의 1심에서 가집행 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8.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R, S(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129,162,653원(위 선행소송 확정판결 원리금 채권의 약 38.1%)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1호증, 을 제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C가 2016. 9. 8.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C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한다. 위 증여는 C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C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그 재산을 은닉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C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가담하였던바, 피고는 강제집행면탈의 공동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 설령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면탈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은 인정되므로, 역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C로부터 지급받은 200,000,000원, 또는 적어도 피고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추가로 배당받을 수 있었던 60,507,60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

가. 주장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주위적 청구)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호증, 을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7. 5. 10. C를 강제집행면탈, 횡령, 배임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장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 9. 8.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을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자금을 은닉하여 원고가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인천지방법검찰청 검사는 2017. 10. 25. C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2017. 10. 30. 원고에게 불기소이유를 통지하였는데, 위 통지서에는 C가 2016. 9. 8. E에서 2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17. 12. 26. 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는데(대전고등법원 2017초재830호), 원고가 2018. 8. 21.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한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서면에는 C가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④ 대전고등법원은 2018. 9. 21. 위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하였으며, 그 결과 C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를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한 후 이 사건 범죄사실이 기재된 불기소이유 통지서를 받은 2017. 10. 30.경, 또는 늦어도 원고가 C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한 후 이 사건 범죄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한 2018. 8. 21.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 범죄사실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472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9. 9. 18.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주위적 청구)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의 침해에 해당하여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의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C에 대하여 관련 민사판결에서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C가 그 책임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다시 자신의 사실상 배우자인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돈을 은닉하였으며 C는 이로 인하여 강제집행면탈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현재까지 C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9, 10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C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Q을 통하여 충북 진천군 소재 T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매입운영하였고, 피고가 2015. 11.경 위 사업에 400,000,000원을 투자하여 2019. 11.경까지 투자원금 외에 적어도 300,000,000원 이상의 수익을 취득한 사실, ② 피고는 C로부터 송금받은 200,000,000원에 관하여, 관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호텔과 관련하여 C에게

400,000,000원을 빌려주면 약 1년 후 200,000,000원을 덧붙여 받기로 했는데 C가 400,000,000원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어'라거나 'C가 호텔을 인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에게 주식회사 Q의 경영권을 포함한 호텔 지분 일체를 넘기는 동시에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C가 피고에게 2억 원의 채무를 진정으로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C가 피고에게 진정한 변제로서 위 2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C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접어들어서도 위 200,000,000원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다가 도중에 이를 번복하여,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의 지분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C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를 다시 N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원고는 피고가 C로부터 상당한 재산적 이익을 제공받았고, 관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가 C의 무자력상태와 채무면탈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고는 이 사건 호텔 투자 이전에는 C와의 친분이나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고가 2016. 9. 8. 무렵의 C의 채권자 등과 같은 C의 구체적인 채무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 피고가 이 사건 호텔 투자와 관련하여 C와 거래관계를 맺은 이후 C로부터 200,000,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다시 C가 지정하는 자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거나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공모가담하였다거나, 이에 가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함으로써 C의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윤선, 판사 오한승, 판사 우희성